

부산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54804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5480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가합4026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박원환

변론종결 2024. 3. 6.

판결선고 2024. 3. 2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가합4026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43,429,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3,429,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중 각 “피고 D”을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중 “피고 주식회사 B” 내지 “피고 B”을 “주식회사 B”으로, “피고 C”을 “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 내지 17행의 “공동담보의”를 “공동담보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의 “88,429,210원”을 “43,429,21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의 “사해행위가”를 “사해행위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행 내지 제11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7, 8, 20호증, 을다 제1 내지 7호증,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피고는 강관 및 철제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건축자재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2012. 3.경부터 B와 사이에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매년 수억 원 내지 10억 원에 이르는 배관 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해왔다.
- (2) B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2021. 3. 17.경 액면금 110,000,000원, 2021. 4. 19.경 액면금 180,000,000원, 2021. 5. 18.경 액면금 150,000,000원 등 액면금 합계 44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배서교부하였고, 2021. 6.말경 위 각 어음금을 공제한 B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는 453,639,163원 가량이었다.
- (3) B은 피고에게 매월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상거래를 계속해 왔는데, B은 피고에게 2021. 6.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1. 3. 내지 5.분 외상대금으로 지급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도 그 발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는 미수금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B에 미지급 물품대금 결제를 독촉하였다.
- (4) 이에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105,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된 11,570,790원과 피고가 위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8,429,210원(= 105,000,000원 - 11,570,790원 - 5,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 (5) 한편, 피고와 B은 2021. 6.경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의 변제 및 추가 물품거래를 위한 합의를 하였다(갑 제20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6)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21. 9. 17.경까지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공급한 물품대금은 2021. 7.분 235,438,875원, 2021. 8.분 159,930,282원, 2021. 9.분 63,301,275원으로 합계 458,670,432원이다.
- 나)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B의 물품대금채무를 C이 연대보증하는 등으로 직접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제1, 3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각 피보험자들이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비록 C이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C은 B의 대표자이자 실질 지배자이고, B은 C의 주요 자산이자 수익창출 수단이므로, C의 재산 형성 및 가치 유지와 B의 기업가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다면 C으로서 B의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C의 변제 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도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이므로, 주채무자인 B의 사업이 정상화 되어 변제 자력을 회복할 경우 그 연대보증인인 C의 보증채무 역시 그만큼 경감될 수밖에 없는 관계다.

② C은 B의 대표자로서, 피고가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상황에서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B의 사업을 정상 운영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 유일한 방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실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3개월간인 2021. 9. 17.경까지 B에게 물품을 공급했고, 그로써 B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달리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가 B에게 물품을 계속 공급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는 별개의, 이 사건 합의 및 피고와 B 사이의 별개의 부동산 매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B이 현금 내지 어음 지급의 방법으로 변제할 금액 및 변제일을 정하고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일 뿐인바,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피고가 평시의 두 배에 달하는 외상대금에도 불구하고 B과의 거래를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갑 제17호증에 의하면 피고와 B 사이의 별개의 부동산 매매는 2021. 9. 9.에 체결된 것이므로 그 이전 거래관계가 지속된 것이 위 매매계약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변제받은 물품대금은 88,429,210원인데, 위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B에 새로 공급한 물품대금은 그 5배가량인 합계 458,670,432원 상당인바, 이로써 피고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의 손해 액수는 약 10억 원에 이른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당하게 염가로 체결되었다거나, C이 피고와 통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박원근, 판사 김영환

별지